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6037 |
|----------|------|

발의연월일 : 2017. 3. 7.

발의자 : 함진규 · 윤후덕 · 박덕흠

이은재 · 이철우 · 김기선

정유섭 · 이현승 · 염동열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의 목적물이 없는 계획이나 설비단계에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3조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및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제24조 이하에서는 그 주체를 운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상청구의 대상이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현행법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5조 및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설치·운영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을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2항의 사유로”를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로, “운영기관은”을 “경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운영기관에”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로, “운영기관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환경오염피해조사단”으로, “설치할”을 “설치·운영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운영기관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3항 ·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 중 “운영기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 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기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기관에”를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운영기관에”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기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후단 중 “운영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장계약금

제44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이”를 “그 밖에 이”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인·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한 행위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청구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u>설치·운영할</u> 수 없다.</p> <p>④ <u>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u>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p> | <p>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운영할</u>. ④ <u>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u>----- ----- -----.</p> |
| <p>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 ③ (생 략)</p> <p>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 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 항제1호 또는 <u>제2항의 사유로</u>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u>운영기관은</u>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p> | <p>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u> <u>경우</u>. ----- ----- -----.</p> |
| <p>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p> | <p>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 -----</p> |

③ 운영기관은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
지급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

③ 환경부장관

④ 환경부장관

⑤ 환경부장관

| | |
|---|--|
| 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⑥)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
|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u>운영기관</u> 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u>환경부장관</u> ----- ----- ----- ----- ----- ----- -----. ② <u>환경부장관</u> ----- ----- ----- -----. |
| ② <u>운영기관</u> 은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③ <u>환경부장관</u> ----- ----- ----- -----. |
| ③ <u>운영기관</u>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
| ④ (생략)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u>운영기관</u> 에 심사청구를 할 수 |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 ----- ----- --- <u>환경부장관</u> 에게----- |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
-----.

② 환경부장관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 까지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
-----.